「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가.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이행사항으로 이차전지 기업 및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노·사·민·정 상생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출연금을 2027년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해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2) 소 재 지 :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, 구미전자정보기술원

3) 출연금액 : 300백만원

4) 사 용 처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상생협력기금 조성

나. 사업 개요

1) 사 업 명 :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

2) 운용주체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

3) 사업내용 :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사항인 상생협력기금 운용 및 센터 운영관리를 통한 노·사·민·정 상생협력 강화

- 이차전지 관련기업 기술역량 강화 지원
- 기업 맞춤형 상생 지원
- 지역인재 지원
-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 등

다.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1) 출연안 제출 : 2026. 10월

2) 출연안 심사 및 의결(제300회 임시회) : 2026. 10. 13. ~ 22.

3)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상생협력기금 출연 : 2027.

4)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업무추진 및 기금운용 : 2027. ~

라. 기대효과

1) 기금 운영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업[(주)LG-HY BCM]과 이차전지 관련기업에 기술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, 이차전지 관련 전공자에게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이차전지 소재 산업 육성에 기여

2) 지역 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여 이차전지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이차전지 기업 지원, 노사 상생 및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내 상생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2)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

3)「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」 제7조, 제19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출연안은

- 노사민정 상생협약에 따른 이차전지 기업 및 근로자 지원 등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을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과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㈜LG-HY BCM 등 협력 기업 및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역량 강화, ESG 경영 지원,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의 사업 추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기금 지원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재 정착이라는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됨.